

제3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개최한 「작업환경측정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제와 지정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편집실>

■연제1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대 보건대학원 / 김 치 년

1. 작업환경측정을 바라보는 입장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 사업장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는 측정의 필요성을 떠나서 원하지 않고 있고 대기업 사업주는 측정결과가 낮게 나오길 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우, 소기업은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반면 대기업은 측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 참여하려고 하며 정부는 문제점을 인지하지만 개선과 관리가 어려워 소극적 행동을 유발하고 측정기관은 힘들어하며 의욕이 점차 줄어들어 전문성 결여로 이어진다.

2. 측정제도의 국내외 비교

측정대상은 국내의 법적 측정대상 물질의 수는 많은 실정이므로 더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적 인자 188종, 물리적 인자 2종인 반면에 미국 40여종, 일본 108여종, 영국 17여종에 불과하다. 측정대상 선정시 위해도 평가의 개념이 없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에 대한 측정의 확대가 어렵다.

측정 실시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격구분은 있으나 역할이 유사하며, 지정측정기관의 요

건은 설비 및 장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문가 양성에는 미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은 자격에 따른 명확한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영국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측정기관, 컨설팅 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측정주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 미국체계의 혼합형태이다.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다소 엄격한 규제, 다양성 확보, 위해도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법적 측정주기 설정에 건강영향에 대한 개념이 미흡하다.

측정결과의 활용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부에 보고의무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측정의 경우에만 실시 여부를 보고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강구조치는 일본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출기준의 단순비교로 관리와 연계하기는 어렵고 필요시 포괄적 측정이 필요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도 평가가 필요하다.

3. 측정대상의 확대

현재 법적 측정대상은 외국에 비해 많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적 대상이 많아질수록 중점관리가 어렵고 획일적인 측정의 고착화를 유도할 수 있다. 법적 이외의 측정대상 선정은 위해도 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측정과 노출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노출 기준이 없는 물질의 위해도 평가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대상의 확대를 유도한다.

4. 측정기관과 사업주의 담합 가능성

측정기관과 사업주의 담합 가능성은 대기업보다 소규모 사업장이 높으며 보고제도는 소극적인 측정행위를 유도함으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측정비용 지불방식에 의한 담합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담합의 방지를 위해서는 노사 공동관리 등 내부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노조활동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내부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다.

5.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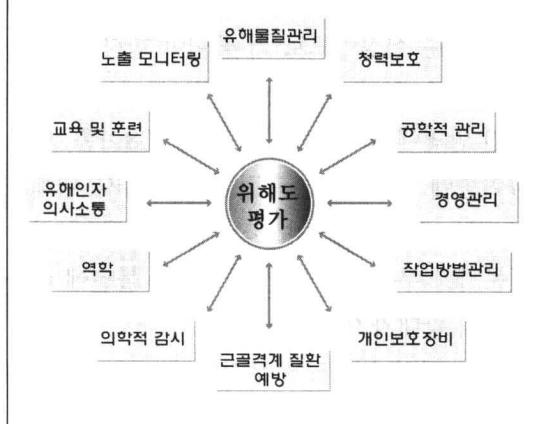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선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감독관 또는 정부의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이 타당하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6. 개선방안 - 측정제도·운영의 문제점을 기초로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개선은 산업보건 전반의 제도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측정제도는 현실성을 어느 정도 제외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교과서적 개념을 도입 단순화한다. 또한 현실성이 너무 고려되면 산업위생 전반적인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외국제도의 도입 시에는 국내의 현실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획일적인 제도를 다양성과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획일적 제도에서는 전문가의 양성이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하고 모든 사업장이 포괄적인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도 착안해 전문가의 판단 부여를 통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

위해도평가에 따른 작업환경관리



도록 한다.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법적인 측정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법적 이외의 측정대상은 위해도 평가로 선정하며 측정주기를 다양화해서 노출 등급과 건강영향 등급을 고려해 측정주기를 선정한다.

측정 실시자에게는 먼저 측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법적 사항에서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내부관리 시스템의 활성화에 따른 자율적인 측정을 유도하며 정부의 관리와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자격기준에 따른 역할의 차별을 통해 민간화와 자율화를 추진하며 지도사 활성화로 측정과 관리를 유도한다.

규제에 있어서는 사업장 외부 규제를 내부

규제로 바꾸고 측정결과 보고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위해도가 낮으면 측정주기와 보고제도를 완화하고 이러한 결정은 전문가가 실행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필요시 공학적 대책 이외의 관리를 유도하여 사업주의 개선 및 관리 의지를 높이도록 한다.

위해도 평가의 도입도 필요하다. 위해도 평가는 법적으로 다루어지면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주체는 법보다는 전문가 판단에 맡기고 법은 위해도 평가 활성화를 유도하게 한다. 위해도 평가에 따라 유해물질관리, 공학적 관리, 경영관리, 개인 보호장비, 의학적 감시, 교육 및 훈련 등 작업환경 관리를 진행한다. ♦

■연제2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사업주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 노 영 만

1.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 구조

